

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[별표 20의3] <개정 2021. 3. 3.>

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(제160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	직무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직무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
100만원 미만	수동	강등-감봉	해임-정직	파면-강등
	능동	해임-정직	파면-강등	파면-해임
100만원 이상		파면-강등	파면-해임	파면

※ "금품·향응 등 재산상 이익"이란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"금품등"을 말한다.